

순환골재 규격서 및 시방서

가. 적용범위

순환골재라 함은 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” 제2조제7호의 규정(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)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.

나. 일반사항

- 자 재 명 : 포장용 순환골재
- 납품장소 :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4가 6-25 목포내항여객부두건설공사 현장 일원
- 납품수량 : 4,893m³
- 인도조건 : 공사현장하차도

다. 규격 및 수량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순환골재	40mm이하	m ³	4,893m ³	공사현장하차도

라. 품질기준

(1)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등의 파쇄,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.

구분	시험 방법	기준
액성한계	KS F 2303	25 이하
소성지수	KS F 2303	6 이하
마모감량(%)	KS F 2508	50 이하
수 정 CBR 값 (%)	KS F 2320	30 이상
모 래 당 량	KS F 2340	25 이상

(2)보조기층 재료의 입도

입도 번호	통과중량백분율(%)							
	75 mm	50 mm	40 mm	20 mm	5 mm	2 mm	0.4 mm	0.08 mm
SB-1	100	-	70-100	50-90	30-65	20-55	5-25	0-10
SB-2	-	100	80-100	55-100	30-70	20-55	5-30	0-10

마. 검수 및 기타사항

- (1)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(2) 모든 자재는 본 구매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,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 공급 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3) 계약체결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해당 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어야 한다.